

춘천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19가단4659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김형석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수복

변론 종결 2021. 10. 27.

판결 선고 2021. 12. 15.

주 문

1. 가. 피고와 C 영농조합법인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0. 체결한 매매계약을 23,430,89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3,430,8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와 D가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3.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2017. 8. 28. 접수 제76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C 영농조합법인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0. 체결한 매매계약을 26,928,76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6,928,7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1. C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과 이 사건 법인 소유의 강원도 인제군 E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25.경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3.경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이던 D를 상대로 굴삭기 등 작업비용에 관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12. 21. "D는 원고에게 1,7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인용판결(춘천지방법원 인제군법원 2016가소486)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6. 4. 10. 이 사건 법인과 그 대표이사 D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8. 1. 24. "이 사건 법인과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7,8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인용판결(춘천지방법원 2016가단53476)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에서 2019. 4. 12. "이 사건 법인과 D는 공동하여 2019. 6. 30.까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춘천지방법원 2018나50755)을 받았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9. 5. 4.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법인은 2016. 5. 10. D의 배우자인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13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5. 2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D는 2017. 8. 23. 피고와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16가단53476 판결, 같은 법원 2018나50755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은 원고가 공사를 완성한 2016. 4. 25.경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법인의 무자력 및 사해행위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상태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참조).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10, 11, 14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시가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6. 5. 10. 무렵 이 사건 법인의 적극재산은 ① 이 사건 건물의 2016. 5. 2. 기준 감정가 149,507,000원(갑 제14호증)1), ② 현금 354,848원(갑 제11호증), ③ 단기 대여금 147,600,000원(갑 제11호증), ④ 미수 수익 3,740,000원(갑 제11호증), 합계 301,201,848원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① 장기차입금 채무

149,818,107원(갑 제11호증), ② 원고에 대한 채무 17,895,000원(갑 제4호증의 2), 합계 167,713,107원2) 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적극재산은 300,601,848원이고 소극재산은 167,713,107원이어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처분함으로써 적극재산이 151,694,848원(= 301,201,848원 - 149,507,000원)3) , 소극재산이 167,713,107원이 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건물을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법인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피고의 사해의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 사건 법인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선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때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호증, 을 제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이던 D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법인의 재산 상태에 관하여 잘 알 수 있었던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130,000,000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제출되지 않은 점, ③ 피고는 2016. 5. 10.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2017. 11. 23.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④ 피고는 2017. 12. 28. D와 협의이혼 신고를 하고도 D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라. 원상회복(가액반환)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법칙 또는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사해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부동산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채무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2018. 8.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근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 사건 법인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이 사건 건물의 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갑 제14호증의 기재, 감정인 F의 시가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2021. 10. 18. 기준 감정가는 173,411,790원인 사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 G조합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149,980,897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이와 유사한 가격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분은 위 173,411,790원에서 149,980,897원을 공제한 23,430,893원이라고 보인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채권액은 26,986,301원(= 20,000,000원 + 2019. 7. 1.부터 2021. 10. 27.까지 850일 동안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986,301원,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26,986,301원보다 적은 금액인 이 사건 건물의 공동담보가액 23,430,893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23,430,8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원고가 구하는 26,928,767원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의 가액 23,430,893원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으므로, 위 23,430,897원을 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D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D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인제군법원 2016가소486 판결에 기한 공사대금채권 및 춘천지방법원 2016가단53476 판결, 같은 법원 2018나50755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D의 무자력 및 사해행위

갑 제4, 12, 13호증, 을 제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7. 8. 23. 무렵 D의 적극재산은 ① 이 사건 부동산 시가 117,422,000원(= 시가 257,822,000원 - G조합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채권최고액 140,400,000원), ② 강원도 인제군 H 전 6,982.6㎡, I 대 450㎡의 2017. 9. 22. 기준 감정가 347,802,200원(갑 제12호증), ③ 강원도 인제군 J 임야 400㎡의 2017. 8. 23. 기준 감정가 13,200,000원(갑 제13호증), 합계 478,424,200원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① 원고에 대한 채무 18,885,353원(춘천지방법원 2016가단53476 판결금 17,895,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6.부터 2017. 8. 23.까지 404일 동안 연 5%의 지연손해금) 및 2,020,392원(춘천지방법원 인제군법원 2016가소486 판결금 1,737,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23.부터 2017. 8. 23.까지 397일 동안 연 15%의 지연손해금), 합계 20,905,745원, ② G조합에 대한 H, I 토지에 관한 2016. 6. 16.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00,000,000원, ③ K회사에 대한 채무 47,000,000원, ④ L조합에

대한 채무 15,333,917원, ⑤ M단체에 대한 채무 86,892,202원, ⑥ N카드에 대한 채무 4,226,030원, ⑦ O카드에 대한 채무 7,804,844원, ⑧ P카드에 대한 채무 2,168,598원, ⑨ Q카드에 대한 채무 3,701,460원, 합계 388,032,796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D의 적극재산은 478,424,200원이고 소극재산은 388,032,796원이어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나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함으로써 D의 적극재산이 361,002,200원(= 478,424,200원 - 117,422,000원), 소극재산이 388,032,796원이 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인다.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D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피고의 사해의사

피고는 2017. 12. 28. D와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고 2017. 8. 23.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호증, 을 제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D의 배우자로서 D의 재산 상태에 관하여 잘 알 수 있었던 점, ② 피고는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증여받은 점, ③ 피고는 2017. 8. 23. D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2017. 11. 23. D가 대표로 운영하던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④ 피고는 2017. 12. 28. D와 협의이혼 신고를 하고도 D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라. 원상회복(원물반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3. 체결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D에게 2017. 8.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윤이나

별지

1) 이 사건 건물의 가액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일시로부터 5년 이상 지난 2021. 10. 18. 기준 감정가 173,411,790원을 주장하였고, 원고는 위 감정가를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시점으로 보정하여 198,022,200원 정도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2016. 5. 10.경 매매대금이 130,000,000원으로 기재되었고(갑 제6호증의 1) G조합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근접한 2016. 5. 2.경 감정평가한 금액이 149,507,000원이었으므로(갑 제14호증), 위 감정평가 금액이 객관적이라고 판단된다.

2)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조합에 대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016. 5. 10.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원고가 주장하는 198,022,200원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173,411,790원으로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한 이후 이 사건 법인의 적극재산은 모두 151,694,848원이 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에는 변함이 없다.